##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8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1.

발 의 자:배준영・이성권・정성국

이양수 · 최보윤 · 강명구

강대식 • 구자근 • 서명옥

이인선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통학거리에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교육감에게 통학차량 지원,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의11).

법률 제 호

## 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의11제1항 중 "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"를 "통학차량 지원,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해당"을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"으로 한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 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의11(통학 지원) ① 교육감	제60조의11(통학 지원) ①
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	
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	<u>통</u> 학차량 지
<u>을 할 수 있다</u> .	원,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
	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통학
	지원 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예
	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	<u>③</u>
필요한 사항은 <u>해당</u> 시·도의	<u>대통령령으로</u>
조례로 정한다.	<u>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</u>
	,